



2024.12.30.

국회미래연구원 | 국회미래의제 | 24-07호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안수지, 서해정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안수지 부연구위원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요약

- 서론
- 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법률 현황 분석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

요약

-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적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주거와 일상생활돌봄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 관련 법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돌봄지원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을 구현하기에 법률상 한계가 존재함. 현재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 중
- 서울시 및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체사업,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에서는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지원 내용으로는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공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한계점도 존재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어려움, 다양한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로 전달체계의 미흡성, 발달장애인 제공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부족 및 서비스 다양화 부족,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및 고용불안정성, 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산정 등이 그것임
-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거주시설 이외 재가 장애인 등 사업 대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수준(지원시간)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전담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업무 매뉴얼 제공 및 적절한 교육과 함께 업무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기준 및 보수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를 개선할 필요
-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제공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
-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 및 욕구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함께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필요
- 입주자의 선택권과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주택공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계약방식을 개선할 필요
- 현재 주거생활지원서비스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사업 구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근거 법률 제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발달장애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며, 인지능력 및 자기 의사표현 능력의 제한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많아 지원 필요도가 높음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은 일상생활 시 지원이 필요하며, 전 생애에 걸친 보호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71%이며, 발달장애인의 18.3%는 중복장애를 가졌고 37.7%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중 36.8%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일상생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88.2%는 일상생활 시 주로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돌봄 및 지원의 필요도가 높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2022)
 -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및 정책의 한계로 인하여 매년 10건 내외의 가족 참사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구의 증가, 장애인 및 돌봄 당사자(부모)의 고령화,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 천명당 장애인 수는 2010년 49.83명에서 2023년 51.47명으로 증가하였고, 인구 천명당 발달장애인의 수는 2010년 3.49명에서 2023년 5.31명으로 증가함

[표 1] 인구 천명 대비 장애인 수

구분	2010	2020	2023
인구 천명 대비 장애인 수	49.83	50.80	51.47
인구 천명 대비 발달장애인 수	3.49	4.78	5.31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중은 2015년 42.3%에서 2023년 53.9%로 증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비중 또한 2015년 3.7%에서 2023년 5.4%로 지속적으로 증가

[표 2] 65세 이상 장애인 비중

구분	2010	2020	2023
전체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중	37.1%	49.9%	53.9%
발달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중	3.1%	4.7%	5.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을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전체 장애인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11년 17.4% 수준에서 2023년 26.6%로 증가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2024)

■ 과거에는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적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및 돌봄 지원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¹⁾)에 따라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 확대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UN에서 채택, 2024년 11월 현재 기준 191개국 이 비준 하였으며, 주요 영역은 자립생활, 건강·재활, 교육, 소득, 근로, 정보접근성, 문화·체육, 이동·접근, 안전, 인식개선 등임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동참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2014)²⁾함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남
- 정부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로드맵, '21년 8월)」 등에 따라 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서부터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종합계획 상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분야에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추진

1)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장애인권리위원회 제01차 최종견해"(2014.10.29.배포) 참고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였고, 정부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며 로드맵을 발표(2021.8.)하였고,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22~’24)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옴
- 최근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자립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논의를 진행 중이며,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개선 및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중
- 그 중 대표적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주거와 돌봄을 연계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에서도 지자체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 근거가 미비하며,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자립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
 -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계획을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탈시설 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임
 -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 앞서 서울, 인천, 경기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와 주거복지 분야 간의 행정적 분절로 인해 유연한 협력이 어려움(전지혜 외, 2022)
 - 장애인이 자립할 거주 공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의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자립지원이 어려움(현명이·김현승, 2018)
 - 자립지원 인력 외에도 지역 내 복지서비스가 적절히 연계·제공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자립이 유지되기 힘들 수 있음(이병화·이송희, 2020)
-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지자체 및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2) 정책 환경

■ 발달장애인 현황

-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3년 기준 27만 2,52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 또한 2019년 9.2%에서 2023년 10.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표 3]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장애인전체	2,618,918 (100%)	2,633,026 (100%)	2,644,700 (100%)	2,648,424 (100%)	2,641,896 (100%)
발달장애인	241,614 (9.2%)	247,910 (9.4%)	255,207 (9.6%)	263,209 (9.9%)	272,524 (10.3%)
- 지적장애	212,936 (8.1%)	217,108 (8.2%)	221,557 (8.4%)	225,607 (8.5%)	229,780 (8.7%)
- 자폐성장애	28,678 (1.1%)	30,802 (1.2%)	33,650 (1.3%)	37,602 (1.4%)	42,744 (1.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현황

- 발달장애인 중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71%³⁾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일반 장애인 (35.3%⁴⁾)에 비해 높음
 - 발달장애인의 18.3%는 중복장애를 가졌고 37.7%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도전적 행동⁵⁾으로 인하여 돌봄에 어려움을 겪음⁶⁾
 - 발달장애인의 주 돌봄자는 부모(78.6%), 배우자(8.0%), 형제, 자매(5.9%) 순으로 나타났고, 주 돌봄 가족원 부재 시 돌봄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는 28.5%에 지나지 않음⁷⁾
-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로는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아 돌봄서비스, 가족휴식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이 있음
-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이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제공되나,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 돌봄서비스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에 차등을 둠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4) 보건복지부(2024.4.30.),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동(30.6%), 물건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행동(22.3%),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동(20.9%) 등의 도전적 행동이 발생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표 4] 발달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 현황

구분	주요 내용
활동지원서비스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이상 산출된 경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함.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면제~10% 부담) 납부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월~금,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단, 다른 기관(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등은 이용할 수 없음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만6세이상 만 18세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66시간(월~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을 지원하며,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광, 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
장애아 돌봄서비스	만18세미만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아동의 가정에 파견, 필요로 하는 일상 생활, 학습 및 놀이, 외출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이내에서 지원함(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120%초과 가정은 시간당 이용료의 40%(4,850원) 본인부담). 연 1,080시간 초과 시 소득 기준 상관없이 이용료 전액(12,140원) 본인부담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의 형태가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8세이상 65세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돕고 밤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함. 신청 및 심사를 통해 24시간 개별 1:1 지원(월~금, 24시간), 주간 개별 1:1 지원(월~금, 오전10시~오후5시), 주간 그룹 1:1 지원(월~금, 오전9시~오후6시) 등을 받을 수 있음
긴급돌봄서비스	만6세이상 만 65세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로, 낮 활동, 야간 돌봄, 식사제공 등을 지원함. 1회 입소 시 1~7일(24~168시간, 연 최대 30일) 이용이 가능하며, 1일 이용료는 15,000원, 식비는 15,000원임

주: 일부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장애인 거주시설 및 시설 거주 현황

-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2년 1,348개소에서 2021년 1,535개소까지 증가하였고 2023년은 1,529개소로 2021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
 -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대상 거주시설은 감소하였으나,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 시설은 증가하였으며, 단기거주시설 및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또한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
 - 거주시설 내 장애인 정원은 32,229명, 현원은 27,352명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2016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추이

- 이는 지체장애인의 탈시설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⁸⁾가 이루어져 온 영향으로 볼 수 있음

[표 5] 장애인 거주시설 및 거주인 수 현황

구분		2012년	2016년	2021년	2023년
시설수 (개소)	지체,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장애유형별	342	381	360	355
	중증장애	201	233	249	252
	장애영유아	10	9	9	9
	단기거주시설	128	146	164	167
	공동생활가정	667	736	753	746
	계	1,348	1,505	1,535	1,529
거주인 수 (명)	정원	35,545	35,232	32,969	32,229
	현원	30,640	30,980	28,565	27,352

주: 장애유형별 시설에서는 '지적장애' 유형이 시설수의 80% 이상을 차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각 연도)

■ 발달장애인 자립 수요 및 필요한 지원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에서 자립 수요는 약 15~30% 전후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설장애인 24,214명을 대상(그 중 발달장애인은 80.1% 차지)으로 시행하였던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는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⁹⁾, 그렇지 않은 비율이 59.2%로 나타남(보건복지부(202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인천시의 재가 장애인 7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5.4%가 거주시설 입소를 알아본 경험이 있었고,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비율은 34.7%로 나타남(전지혜 외(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방안연구)
 - 대구시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1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시설에서 나가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65.8%이었는데, 혼자 살고 싶다고 한 비율은 28.2%이었으며 그 밖에 친구(18.0%), 배우자(15.0%), 가족(13.6%), 전문인력(7.8%) 등의 순으로 나타남(김지아 외(2022),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연구용역)

8) 2012년 대비 2017년 장애인 거주시설 규모별 거주 인원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200인 이상 시설의 거주 인원 감소율은 49.5%, 150인 이상~199인 이하 시설의 감소율은 41.9%이었으며, 31인 이상~49인 이하 시설은 거주 인원 9.9% 증가, 30인 이하 시설의 인원 증가율은 23.7%로 나타남(서해정, 이선화(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9) 의사소통이 가능한 6,035명(전체의 28.5%)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 경기도 거주시설 장애인 1,018명을 대상으로 한 자립 욕구 조사 결과,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기준 15.9%로, 2016년 39.6%, 2019년 27.9%에서 다소 감소하였음(이병화 외, 2022.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표 6]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자립 욕구

구분	전국	인천	대구	경기
자립을 원하는 비율	33.5% (2021)	34.7% (2021)	28.2% (2022)	15.9% (2022)
조사 대상자	시설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6,035명	재가 장애인 71명	시설 장애인 149명	시설 장애인 1,018명

자료: 보건복지부(202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인천시(2021),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2022),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연구용역., 경기복지재단(2022),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위의 조사들에 따르면, 시설에서 독립하여 자립하였을 때 필요한 서비스로는 경제적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걱정되는 부분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 경제적 어려움, 금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 거주 유형

- 재가를 제외한 발달장애인의 거주 유형을 시설 거주에서 자립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따라 크게 구분해 보면, 시설거주 유형, 자립 전환시기의 거주 유형, 자립 후 거주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시설거주 형태로는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365쉼터 등이 있으며,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에서 공동 생활
 - 장애인의 자립 전환 단계에서 자립 체험 및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는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유형이 있으며, 단기에서 장기체험이 가능함
 - 실제 자립을 하여 거주 생활 전반에 걸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으로는 지원주택(공급형 및 비공급형)이 있음

[표 7] 발달장애인 거주 유형

구분	거주 유형	주요 설명	
시설 거주	거주시설	일반적인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소규모 시설. 시설에 따라 평일에만 운영하여 주말 및 휴일에는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함	
	단기거주시설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365쉼터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 주·야간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 입소기간은 최대 30일 이내	
자립 전환 시기	체험홈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체험하도록 하는 소규모 시설로, 3~5인의 장애인이 1인의 직원과 함께 생활. 단기체험(1개월), 장기체험(6개월) 등이 있으며, 때에 따라 연장 가능함	
	자립생활주택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경험과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지원, 자립역량 향상 및 일상생활을 지원. 서울시의 경우 2년(최장 4년)간 지원	
자립	지원 주택	공급형	공공임대주택+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장애인이 독립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역 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의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비공급형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

- 그 중 ‘지원주택’은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거주 형태임
 - 공급형 지원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거주 가능함
 -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형태로서, 거주 공간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임

-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지원(주택 및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법률 현황
 - 주거생활지원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내용 중 주거(주택)와 관련한 내용
 - 「주거기본법」에서 ‘장애인’을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과 함께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우선지원 대상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100분의 3 이상의 범위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 자립생활(일상생활) 지원과 관련한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서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서비스 연계, 돌봄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장애인 포함)을 정의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표 8] 장애인 자립 및 주거생활지원과 관련한 법률 현황

소관	법률명	주요 내용
국토 교통부	주거기본법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p>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1)로 정한다.</p>
국토 교통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주거약자법)	<p>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p>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p>

소관	법률명	주요 내용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p>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p>
보건 복지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발달장애인법)	<p>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p> <p>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서비스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승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지원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적합성 심사 결과를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별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p>

소관	법률명	주요 내용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의뢰 방법 및 절차, 수립 방법 및 내용, 승인통보·신청·변경·수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p> <p>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시간 및 방법·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거주시설·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2021. 6. 8.></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2024.3.26.제정, 2026.3.27.시행예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p>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소관	법률명	주요 내용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주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상 한계점

- 현행 주거복지법제는 국토교통부 장관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주거복지 정책이 여전히 주거지원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복지지원서비스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임(손현, 2019)
- 주택제공과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주거생활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논의 단계에서는 지원주택특별법의 제정도 고려되었으나, 현행 주거복지법체계에서 하나의 법률을 두 개의 부처(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김도희, 2018)

○ 이러한 법률상의 한계로,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립생활지원 사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항,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활동지원사와 관련된 사항,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내용,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주거생활 유지 서비스 등) 관련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그 밖에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주택의 정의, 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음
- 경기도의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주택의 공급 지원 내용 등 주거와 생활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함께 담고 있음.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주택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표 9] 장애인 주거생활지원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내용(예시)

지자체 조례	내 용
<p>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립생활지원</p> <p>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5.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6.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p>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p> <p>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p> <p>④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의2(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활동지원급여</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p> <p>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5조(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자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2. 지원주택 운영 지원 3.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지자체 조례	내 용
	<p>4.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5. 자립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6.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사, 연구, 교육 등 7. 그 밖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주거지원</p> <p>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의2.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지원사"란 법 제53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입주 지원,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자립생활지원</p> <p>제4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지자체 조례	내 용
	<p>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p> <p>제5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p> <p>제6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같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p> <p>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①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경우 공공일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p> <p>제13조(시설 등 퇴소자에 대한 지원)(개정 2019.08.06.)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등의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p> <p>제14조(주거서비스) ① 도지사는 자립생활 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또는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제15조(공공주택 공급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것 중의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p> <p>제16조(자립생활체험홈)(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의 경험과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관련 사항은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자립생활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p> <p>제17조(자립생활주택 제공) 도지사는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에 불편함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 자립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안 현황

-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중(2024.12.10.기준)이며, 공통적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자립 기반 조성과 관련한 사항,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주거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 및 장애인 주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음
- 해당 법률안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있어서도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음

【표 10】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한 발의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의안명	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2인, 소관위 심사중)	<p>(제안이유)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p> <p>(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할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p>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p>(제안이유)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p>

의안명	내 용
<p>(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 심사중)</p>	<p>(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주거 전환지원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 또는 장애인주택으로 입주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둠(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발굴하여 지역장애인지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계 자립조사 또는 자립육구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발달재활 및 발달지원 연계 제공, 주거·주거유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제공, 주거 전환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자립 준비 지원을 제공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장애인의 역량 강화,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장애인의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증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정의함(안 제3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거주시설 전환 상황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p>
<p>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소관위 심사중)</p>	<p>(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하고자 함.</p> <p>(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p>

의안명	내 용
	<p>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 58조).</p> <p>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612호)으로 이관함.</p>
<p>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9인, 소관위 심사중)</p>	<p>(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을 두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립생활'의 정의가 부재하고,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 범위가 현행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자립생활지원조례)의 내용보다 협소하여 상위법 기능을 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며,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개념 정의와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 조응하기 위함</p> <p>(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모든 장애인이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 정도 등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함(제2조 및 제4조). 나. 매5년마다 수립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제10조의2). 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인식제고 활동을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 자리를 규정함(제46조의3 신설). 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서 기 시행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신설). 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현재 대다수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명칭을 감안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그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함(제54조).</p>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2024.12.10.)

1)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등장 배경 및 개념 정의

■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등장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처음으로 ‘주거유지서비스’라는 용어를 명명
- 기존에는 거주시설에서 지원되었던 주거서비스를 장애인의 거주 전환 후 완전 독립 이전까지 거주생활 전반(주거관리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로드맵에서 언급한 지원서비스¹⁰⁾를 주거가 결합된 지원주택 개념으로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 등을 참고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주거와 복지를 연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즉, 로드맵에서의 ‘주거유지서비스’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¹¹⁾와 본 연구에서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임

■ 공공임대주택과 지원서비스의 결합

-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형태는 매입임대주택과 특화형(구 테마형)¹²⁾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음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 LH공사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가 제안한 주거와 복지 연계한 테마형 임대주택을 건축 후 매입하고, 주거와 서비스가 연계된 임대주택 운영을 제안자에 위탁한 것(ex. 서울 은평구의 ‘다다름하우스’)
- 최근 사용되는 ‘장애인 지원주택’이라는 개념은 노인중심의 ‘케어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케어안심주택과 달리 장애인 지원주택은 주택관리와 서비스관리 주체를 분리하고 단순한 돌봄서비스를 넘어 재택에서 장애인의 주거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스스로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로, 일종의 사례관리 성격을 가지고 있음

10) 지원서비스는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유지 서비스,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라고도 명명

11)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 30) . 제2조(정의)의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2) 2024년에는 기존의 테마형이라는 용어 대신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 ‘19년 신축매입약정 도입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수요맞춤형 공간구성 및 서비스 계획을 반영한 특화형(구 테마형) 매입임대사업임. 일반적인 정의로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축 매입약정방식의 운영 테마가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말함.

- 로드맵에서는 지원서비스 유형을 크게 4가지(주거유지,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지원, 옹호지원)로 구분하였으며, 제공하는 기관은 거주시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사회복지관 등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정 제공기관 선정 가능
 - 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해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의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라는 정책 하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할 것으로 제시하였음(‘22년 시행)
 -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밝혔음

2) 중앙정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유형의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

① 다다름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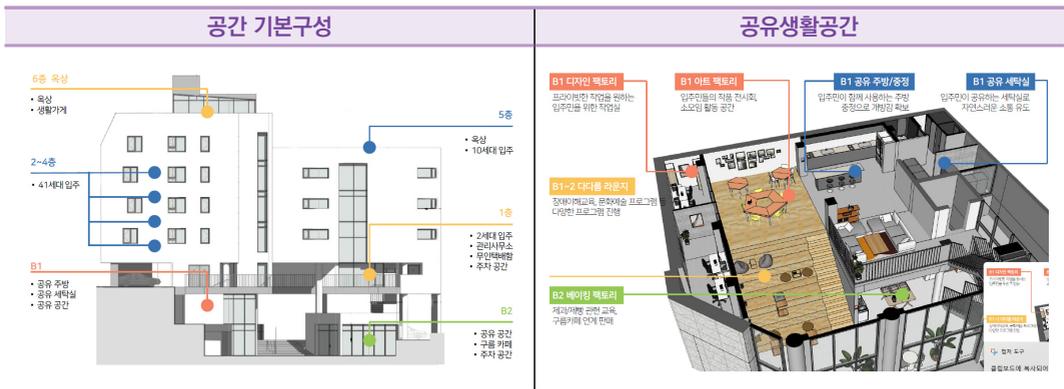
- 로드맵에서 제시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주체의 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운영사를 모집하고, 그에 따라 시공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체계임
 - 민간 운영사는 입주민 특성에 맞는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고 입주민 간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다다름하우스’는 이런 취지에 맞게 전국 최초로 설계되어 2022년 준공한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청년의 통합주택이라 할 수 있음

< 다다름하우스 >

- 본 지원주택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주택 건설 및 주택운영관리사업자로 등록됨.
- 본 주택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지지기반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소규모 커뮤니티와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관련 새로운 특화형 주거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장애와 비장애 사회통합주택으로 살고 싶은 공간을 제공,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본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매입 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감독을 수행함. 건설사업자는 본 주택을 위탁운영하면서 주택관리 및 입주자 커뮤니티 관리를 하고 있음.
- 운영은 준공 후 테마에 맞게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선정된 업체(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아이부키에서 운영하고 있음
- 본 주택의 입주자는 발달장애인 청년과 비장애인 청년, 자립준비 청년이며, 디자인 팩토리, 베이킹 팩토리 등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 최초의 장애-비장애 사회통합을 지양하는 지원주택으로 탈시설을 지원한 생활시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지

- 원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주거공간은 53호로 공유시설은 6곳, 근린생활시설은 카페 등이 있음
- 입주자는 보증금 300~570만원, 월 임대료 18~34만원(시설 대비 45% 수준)
- 특화서비스는 제과제품 생산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자립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라운지 운영,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과 연계하여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제공 등

[그림 1] 다다름 하우스 공간 기본구성 및 공유생활공간



② 여기가(家)

- 여기가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매입임대사업으로 건축 중인 곳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와 아동양육가구, 1인 가구 등 총 28가구가 함께 사는 주택으로 설계되었음(2024년 3월 착공, 2025년 1월 준공 예정)
- 공유시설로는 가족화장실, 무장애놀이터, 대형세탁물 공용세탁 공간, 맞춤형 지원사무실, 건강관리실 등이 있음
- 서울시의 일반적인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와 더불어 1층에 위치할 치료센터에서 입주자의 건강지원을 통해 의료복지를 구현할 예정임

< 여기가(家) >

- 본 주택은 최중증와상장애인(신체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이 유니버설(universal) 설계되었다는 것이 특징(와상장애인용 샤워와 이동 가능한 화장실, 넓은 문폭과 슬라이딩 도어, 화재안전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이며, 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우러져 사는 주택을 표방하고 있음
- 특히, 커뮤니티실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무장애 통합놀이터, 코인세탁소 갈 필요 없는 대형 세탁물 공용 세탁공간, 기본가전 빌트인, 주택관리 운영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사무실, 웰빙 라이프를 위한 건강관리실, 옥상가든, 카페 등 주민 이용시설 등으로 설계됨
- 본 주택은 위에서 언급한 다다름하우스와 달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주택 설계 기획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차원에서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모델의 전국화를 모색하고 있음

3)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

① 서울시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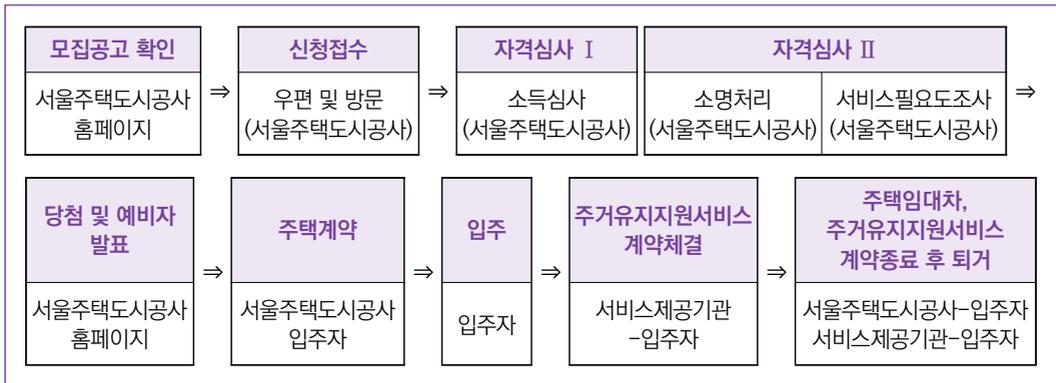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로,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주택¹³⁾을 주거유지지원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이때 제공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
 - 추진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등임¹⁴⁾
 - 서울시는 2016년부터 3년간 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9년부터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본 사업으로 시행 중임
- 현재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며, 총 275호(입주용 251호, 커뮤니티실 24호)가 공급되어 있고, 입주정원은 270명임(2024.3 기준)
 - 운영기관은 총 12개소로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 사단법인, 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다양한 운영사업자가 참여 중임(서울시복지재단(2021),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매뉴얼. p. 47)
 - 서울시가 보조하는 2024년 운영사업비는 총 8,031백만원임(서울시, 2024)
- 본 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1인 가구이어야 함
 - 단,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장애인)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을 심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4,24,660원 2024년 기준)이고 자산기준(세대

13)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주택’이라는 명칭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임

1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거주시설 돌봄지원),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지원), 제17조(주거생활의 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사업의 범위) 등

- 구성원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5억원 이하('23년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입주 가능
- 지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소득 자산과 서비스 필요도 조사, 자격심사위원회의 개별 면담을 거쳐 서울시 장애인지원 주택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됨¹⁵⁾

[그림 2] 서울시 지원주택 이용절차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장애인지원주택 모집공고문(2023.3)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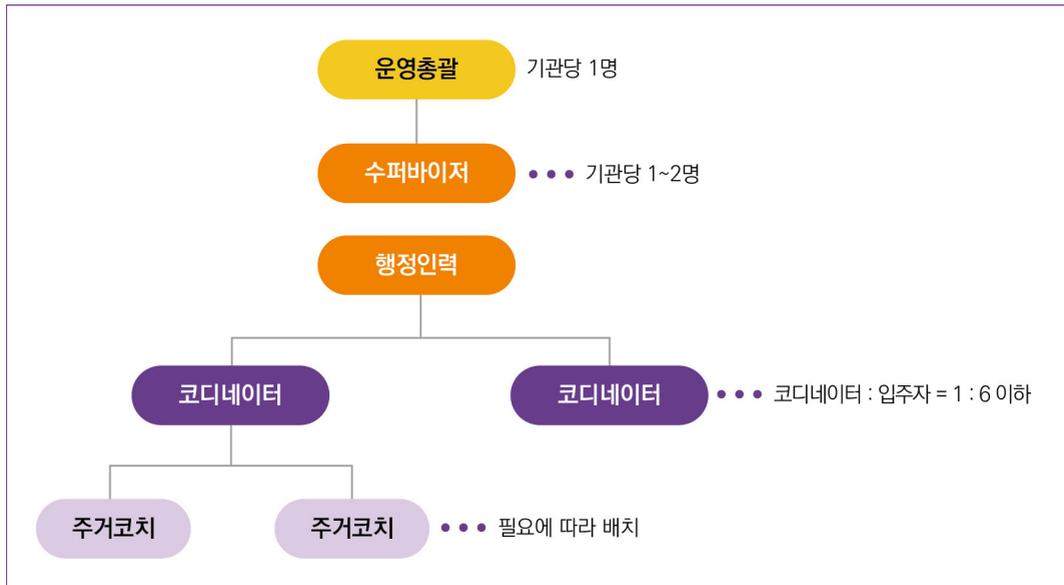
○ 주택지원

- 서울시는 본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서울시 주택정책과),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을 확보(서울주택도시공사(SH))함. 장애인지원주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모집공고를 시행하여 공고일로부터 통상 5~6개월 후 입주가 가능하며, 현재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주로 다가구, 원룸형으로 전용면적이 84㎡ 이하임. 이외 지원주택 공급유형은 건설형 국민임대 주택으로,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전용면적 59㎡ 이하)이며 국민임대 모집 절차 내 장애인 지원주택 물량 일부 포함됨
- 임차계약은 SH공사와 장애인 입주자가 직접 계약하며, 보증금, 월세, 공과금 등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함.
-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상이하나, 매입형인 경우 보증금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평균 23만원에서 최대 34만원 수준임(보증금과 임대료는 조정 가능). 건설형인 경우는 보증금 3,400만원, 월 임대료는 24만원 수준('21년 기준) 이고 일반적으로 시세의 30%수준임

15)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참조

- 1차 소득심사, 2차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 입주자를 선정하며,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가능(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 서울시복지재단 2024.6.)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 일반적으로 입주자의 사전 입주 지원, 퇴거, 주거유지, 위기긴급지원 등을 포함함
 - 서비스 지원 핵심인력인 코디네이터는 슈퍼바이저와 코치의 중간 직위로, 입주자를 직접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약, 초기면접과 욕구사정, 자원개발과 연계, 서비스 종결 및 사후관리, 서비스 기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인력구성은 총괄자(센터장), 슈퍼바이저(팀장급, 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 2급, 장애인복지분야경력 2년 이상)로 구성되어 있음. 이외 비상시적 인력을 주거코치(일상생활지원)를 둘 수 있음

[그림 3]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인력구성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202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운영매뉴얼.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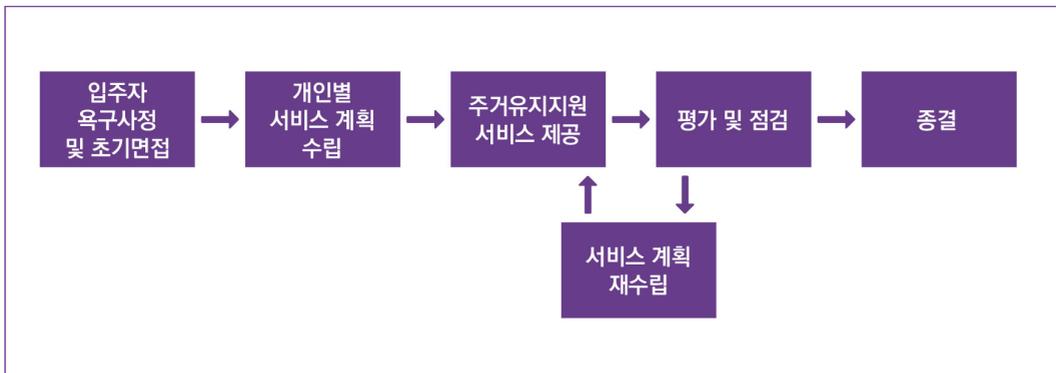
[표 11] 서울시 장애인지원주택 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구분	운영총괄, 슈퍼바이저	주거코디네이터, 주거코치
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16명 이상 지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2명 배치 가능 - 운영총괄 1명, 슈퍼바이저 1명 배치 권고 • 입주자 15명 이하 지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1명 배치 가능 - 슈퍼바이저 1명 배치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코디네이터와 입주자 비율 1:6 이하로 유지 • 주거코디네이터 및 활동지원사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주거코치 채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총괄 및 슈퍼바이저 탄력 배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의 장애정도, 특성,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치가능

출처: 202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침 참고 재구성,
(서울시복지재단 2024.6.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 p.46)

- 입주자 사례관리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함.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등임

[그림 4] 서울시 장애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절차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2024.6.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 p.39

■ (사례) 서울시 충현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 기관 자체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서비스 모형을 개발, 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일상생활, 사회참여, 보건의료, 옹호, 주거 5가지 영역으로 구분 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영역과 지원내용을 분류하였음(서해정 외, 2021)

[표 12] 서울시 충현복지관 주거지원서비스의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주거	주택이해	주택 계약
	주거지선택	주거지 탐색
	이사	부동산 연계, 이삿짐센터 연계, 전기, 가스, 수도, TV 개통, 전입신고
	주거관리 및 유지	주거환경 개선 및 업체 탐색
일상 생활	자기관리	개인위생, 이미용관리, 신분증관리
	가사관리	수납정리, 의복관리, 세탁, 음식물보관, 음식물 조리 및 데우기, 규칙적인 식사, 주방가전 활용, 주방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집청소, 가전제품 사용 및 관리, 보일러 사용 및 관리
	개인안전	외출시 점검사항, 조리도구 안전사용, 소화기 사용방법
	비상대응 계획	화재예방교육, 긴급상황시 신고처, 응급의료상황 대처
	금전관리	체크카드 및 현금사용, 은행업무, 생활비 관리, 금융관련 중요 보안사항
사회 참여	쇼핑	생필품 구입, 비용 지불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이동
	여가활동	여가활동 탐색, 계획, 실행
	지역사회활동	낯활동 기관 이용, 낯활동 기관 이용 예절, 주민센터 이용
	관계	의사소통 방법,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보건 의료	건강관리	건강상태 표현, 상비약 관리,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복약순응,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옹호	선택	자기 의사에 의한 선택, 선택과 책임
	자기옹호	자기 의사 표현, 자신과 타인의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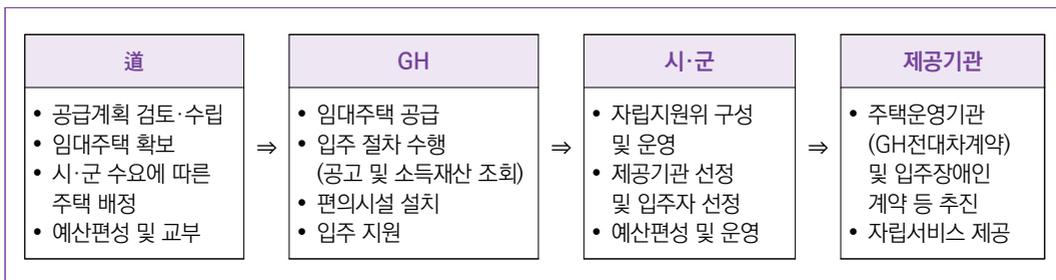
출처: 충현복지관(2019). 성인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사업보고서, pp.16-17

②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¹⁶⁾

■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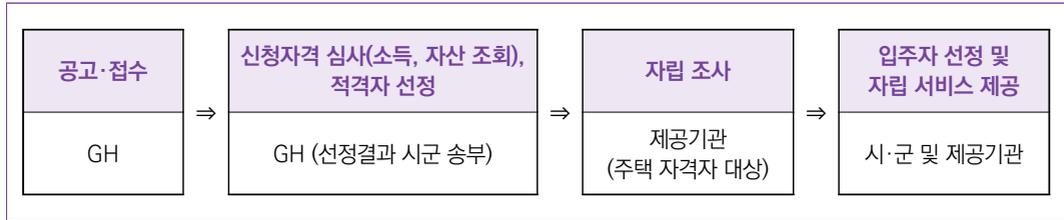
- 경기도는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5.17.전부개정)에 의해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지원주택’ 사업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지원주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독립된 주거와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
 - 경기도는 주택공급 계획수립, 시·군별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경기도 주택정책과가 총괄 운영(동 조례 제4조(지원주택의 공급)), 입주자 지원서비스 및 예산 각 분과별 관련부서(도 장애인자립지원과) 마련
 - 도 수행기관으로는 경기도장애인복지 조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사업 현황, 실적 관리, 지역 전담인력 교육 시행,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
 - ‘23년 복지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3개 시군(성남, 안산, 의왕)과 ‘24년 신규 7개 시·군(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에서 추진(총 도내 10개 시군, 72명 자립계획)
- 경기도 사업의 경우 운영 매뉴얼 및 자립 서비스,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자립지원위원회 구성, 자립조사, 예산집행 기준)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음

[그림 5] 경기도 사업 운영 흐름도



16)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시군 설명회 자료 참조(24. 1.15)

[그림 6] 경기도 장애인 입주자 선정 절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

- 경기도의 장애인자립주택 사업량은 총 46호(자립주택 28호, 자립생활 돌봄사업 18호)
 - 경기도가 보조하는 2024년 운영사업비는 총 2,113백만원(국비 포함 사업비는 총 3,655백만원)으로 도, 시·군 추가 예산에서 전담인력 인건비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추가 최대 300시간),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단기체험 운영 등 예산 구분 간 탄력적 배정 가능
- 사업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1인 1주택 거주 요건, 대상자 선정 시 체험홈 등 자립 훈련자를 우대함

■ 지원내용

- 주택지원
 - 2024년 기본계획에 의하면 주택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생활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과 둘째, 공공임대 주택공급은 없이, 자가나 전·월세 등 주택은 본인이 확보한 상태에서 서비스만 제공되는 ‘장애인 자립생활 돌봄사업’이 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다세대(빌라),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임대(GH, LH) 등을 확보하여 공급(보증금·월세 입주자 부담, 공공임대 입주 소득·자산 기준 적용)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로는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 지원, 자립·자활교육,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이 있음

[표 13] 경기도 자립생활 돌봄서비스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	하위영역	지원내용
주거	주택계약 지원	주택계약,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임대차계약 갱신
	입주지원	입주청소, 입주물품 구입, 전기/가스/인터넷연결, 전입신고, 공적서비스 신청, 초기 적응(정서·심리적) 지원
	주택관리 지원	편의시설 설치(개별), 화재보험, 주택 유지보수(주요시설물 외),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보장구 관리
	가사활동지원	식사관리, 가사유지관리, 의복관리
	금전관리지원	수입 지출 관리 지원, 통장·도장·카드 보관 지원
	의사소통지원	의사소통방식 확인, 의사확인이 어려운 입주자 소통지원
	개인안전 관리지원	안전한 환경구성, 안전관련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안전을 위한 점검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입주전 확인사항, 활동지원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입주자의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사회참여	낮 활동 지원	복지시설 활동, 지역사회 시설 이용
	지역사회활동지원	종교 활동, 여가 활동
	관계지원	자조모임, 가족관계 지원, 친구관계 지원, 지원주택 종사자와의 관계지원
	직업 활동지원	취업 상담 알선, 공공 일자리, 직업 유지
보건의료	건강관리지원	식단관리, 전염병 예방, 운동관리, 수면관리, 약물 관리
	의료기관 이용지원	정기 병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응급의료지원	응급상황 대응, 치료, 입원
옹호	위기대응지원	인권침해사건 대응, 사회서비스 이용 사고 대응, 금융사고 대응, 법률 및 구제지원
	의사결정지원	성년후견제도 및 신탁 연계, 권익옹호기관 이용, 공공후견인 지원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국-道-시·군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예산(道, 시·군 지방비)을 수립하여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월 108만원(인당) 추가 지원이 가능(보조인력 채용 등)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으로 야간, 공휴일 등 효율적 사용(월 70시간(인당) 배정)이 가능함

[표 14] 경기도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세부 내용

구분	자립지원형	집중지원형
대상	• 일자리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필요한 장애인	• 지역사회 정착 초기 적응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정보제공 및 대상자 발굴	• 자립조사 및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 관련 정보 제공	
주거 관련	• 국토교통부, LH공사, GH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개선비 (1인 : 최대 6백만 원)	
자립 정착금	• 자립정착금 지원 (20백만 원)	
소득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	
권익지원	• 공공후견인 및 공공신탁제도 등	
재산관리	• 재산관리지원 서비스(국민연금공단) 등	
활동 지원 및 지역 사회 참여 등	자립지원 인력	• 지역별 장애인 4인당 1인 기준으로 배치(시군별 추가배치 가능) • 대상자 사례관리 및 주거유지 서비스 지원 •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시간 ~ 480시간 지원) • 도, 시군별 추가 지원(월 20시간 ~ 430시간 내외)
		• 자립주택 추가 활동지원 ▶ 자립지원형 : 月 40시간 / 집중지원형 : 月 300시간 • 총 배정된 시간 내에서 지원모형에 따라 운영하되, 자립대상자의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배정
	주간활동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 100시간, 단축형 56시간 등)
	일자리 참여	•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직업재활시설 연계 등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지원
	보건 의료	• 건강검진 : 1인 40만 원 • 보조기기 구매 지원 : 1인 최대 300만 원 • 지역의료기관 협약 등 연계
	문화 및 여가활동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역주민 활동 등 참여 지원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 점검, 경찰서 등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 사업	

4) 중앙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 2000년 이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점차 증대되었고, 2008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국회 비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 등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제출 의무화, 장애인이 독립적 주체로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
- 현 정부도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국정47)로 채택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택 및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을 추진하기 위함
-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21.8.2)

[그림 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개요

비전	<p>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p>
추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자립 지원 • 시범사업 → 법·제도·인프라 정비 → 본사업 시행
목표	<p>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① 자립 효과 분석·평가, ② 장애특성별 지원모형 마련, ③ 지원 대상 규모 추계 등</p>
예상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 자립대상자 발굴기준 및 지역별 대상 규모 추계 ②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및 자립지원 인력 역할 규정 ③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서비스 수요 등 파악 및 개발 ④ 지역사회 자립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중단연구)
시범사업 주요 추진 방안	<p>1) 참여 지자체 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사업추진 의지 고려 • 주택 공급, 예산, 전담팀 구성 등 사업추진 여건 고려 <p>2) 대상자 특성별 모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의 장애특성,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립 지원모형 마련 * 시범사업 연차별 모니터링 및 모형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p>3) 지역사회 안정적 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지자체의 기존 복지제도·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 * 기초생활급여, 활동지원, 일자리, 사회서비스기관, 의료기관 연계 등 •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지원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 장애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22년~)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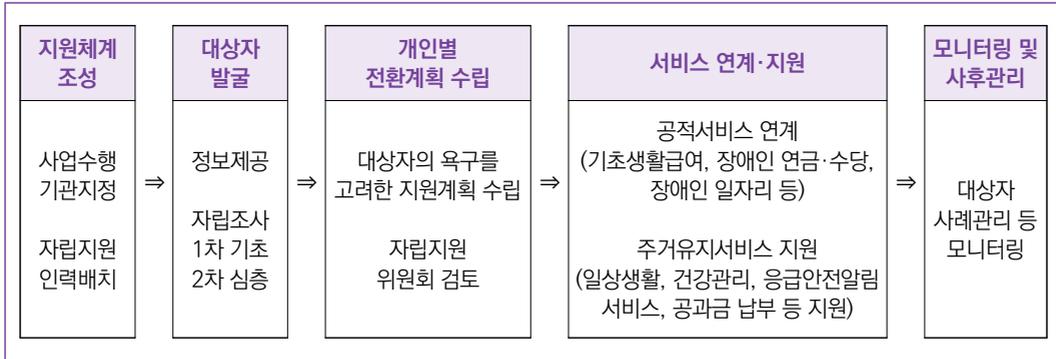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사업주체)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광역이 동 사업을 운영할 지자체를 선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총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시범사업 자문·평가 및 교육 등 지원
- (사업대상)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①장애인거주시설, ②학대피해쉼터 ③단기거주시설 거주 중인 장애인, ④재가장애인(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등)
- (목표) '22년 200명 → '23년 400명(+200명) → '24년 600명(+200명)
- (예산) '22년 4,308 → '23년 9,438 → '24년 11,73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관리 등 서비스 복합 지원·연계(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일자리 등)

[표 15]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

연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광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5개 기초) 제주도, 화순군, 서산시, 경주시, 전주시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광역) 전라북도 • (14개 기초) 군산시, 익산시, 인제군, 거창군, 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광역) 충청남도 • (4개 기초) 강릉시, 구미시, 안동시, 영천시

[그림 8] 복지부 시범사업 운영 흐름도



○ 지원 유형 및 대상자 선정

- 지원 유형에는 자립지원형과 집중지원형이 있으며, 자립지원위원회는 자립 신청 장애인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어 심의
- (자립지원형) 일상지원과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및 낮 활동 등의 서비스를 선호하거나 필요로 하는 대상자, 주로 경증 장애인
- (집중지원형) 건강과 의료,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도전적 행동, 지속적 질환 관리 등이 필요한 장애인), 주로 중증 장애인
- 자립/집중 지원유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표는 다음과 같으며, 생활영역별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및 자립욕구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그림 9] 지원유형 심의 기준표(예시)

지원내용		지원유형	빈도				일일 지원시간				점수		
1	I. 생활지원	1. 화장실 이용	0	1	2	3	4	0	1	2	3	4	
2		2. 옷 입기	0	1	2	3	4	0	1	2	3	4	
3		3. 음식 준비 및 식사	0	1	2	3	4	0	1	2	3	4	
4		4. 목욕 및 개인위생	0	1	2	3	4	0	1	2	3	4	
5		5. 가사 및 청소	0	1	2	3	4	0	1	2	3	4	
1	II. 일자리 지원	1. 일자리/직업 편의 접근 이용	0	1	2	3	4	0	1	2	3	4	
2		2. 동료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3		3. 관리자/코치와의 상호작용	0	1	2	3	4	0	1	2	3	4	
4		4. 직무 습득 및 익힘 정도	0	1	2	3	4	0	1	2	3	4	
5		5. 직무 도움 얻기	0	1	2	3	4	0	1	2	3	4	
1	III. 지역 사회 활동	1. 지역사회 내 장소 이동	0	1	2	3	4	0	1	2	3	4	
2		2. 지역사회 여가활동 참여	0	1	2	3	4	0	1	2	3	4	
3		3. 선호하는 지역사회 활동 (교회, 사회복지기관 등)	0	1	2	3	4	0	1	2	3	4	
4		4. 공공서비스 접근 및 사용	0	1	2	3	4	0	1	2	3	4	
5		5. 쇼핑 및 상품 구매	0	1	2	3	4	0	1	2	3	4	
1	IV. 건강 및 안전지원	1. 약물복용	0	1	2	3	4	0	1	2	3	4	
2		2. 보행 및 이동	0	1	2	3	4	0	1	2	3	4	
3		3. 건강 및 안전 위험 방지	0	1	2	3	4	0	1	2	3	4	
4		4. 건강서비스 및 영양가 식단 유지	0	1	2	3	4	0	1	2	3	4	
5		5. 정신적 안녕 유지 및 신체 유지	0	1	2	3	4	0	1	2	3	4	
1	V. 사회활동	1. 타인과 함께 교류	0	1	2	3	4	0	1	2	3	4	
2		2. 친구사귀고 유지하기	0	1	2	3	4	0	1	2	3	4	
3		3. 다른사람과 개인적 대화	0	1	2	3	4	0	1	2	3	4	
4		4. 친목활동 및 시설 밖 사교활동	0	1	2	3	4	0	1	2	3	4	
5		5. 적절한 사회기술 사용	0	1	2	3	4	0	1	2	3	4	
1	VI. 권익옹호	1. 자기자신을 옹호	0	1	2	3	4	0	1	2	3	4	
2		2. 선택과 결정하기	0	1	2	3	4	0	1	2	3	4	
3		3.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0	1	2	3	4	0	1	2	3	4	
4		4. 돈 관리 및 재정관리	0	1	2	3	4	0	1	2	3	4	
5		5. 법적/시민적 책임 수행	0	1	2	3	4	0	1	2	3	4	
자립욕구										욕구정도	점수		
1	VII. 자립욕구	1. 시설 또는 집(원가정)에서 나가고 싶다.					0 1 2 3 4						
2		2. 혼자 또는 누군가(내가 원하는 사람)와 같이 살고 싶다.					0 1 2 3 4						
3		3. 나만의 집 또는 공간을 갖고 싶다.					0 1 2 3 4						
4		4. 자유롭게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싶다.					0 1 2 3 4						
5		5. 자립을 체험 또는 경험하고 싶다.					0 1 2 3 4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p.92

[그림 10] 지원정도척도(Support Intensity Scale-Adult Version)

구분	내용
지원 유형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유형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0 : 지원 필요 없음 1 : 모니터링 필요(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여 그 사람이 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 2 : 언어 또는 제스처 자극을 요구하는 것 3 : 부분적으로 신체적 지원 필요 4 : 집중적인 유형의 신체적 지원 필요
빈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얼마나 자주 지원이 필요한가?
	0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1 : 한 달에 한 번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하 특별한 지원 필요 2 : 주 단위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매일은 아님 3 :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4 : 시간마다 그 이상으로 지원이 필요함(추가 지원 없이는 한 시간도 해당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나타냄)
일일 지원 시간	해당 개인이 몇 달 동안 정기적 활동(내부 프로그램 및 외부활동 등)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일일 총 지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0 : 지원 시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 지원이 필요한 평균적인 날에 30분 미만의 지원이 제공됨 2 : 30분에서 2시간 미만의 지원 시간 3 : 최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 : 지원이 필요한 날에 4시간 이상 지원이 필요함
자립 욕구	해당 개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욕구와 정도를 확인해 주세요.
	0 : 욕구가 전혀 없음 1 : 욕구가 일부 있으나 낮음 2 : 욕구가 있고 보통 3 : 욕구가 있고 높음 4 : 욕구가 있고 매우 높음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p.93

○ 주택확보 현황

- 현재 210호('24년 4월 기준)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국토부, LH, 지방공사와 공급 협력
- 시범사업 참여지역 대상 매입임대주택 추가 확보 예정(복지부-국토부 협의), 중·장기적 주택확보 방안으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확보 추진

[표 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주택 공급 현황

구분	합계	국토부 (LH본부, 지역본부)	지자체 (지방공사)	기타
합계	210호	188호	11호	11호
'22년	100호	89호	7호	4호(민간3, 청약1)
'23년	94호	88호	1호	5호(민간1, 청약4)
'24년	16호	11호	3호	2호(민간2)

○ 주거유지서비스 주요 내용

-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립대상자에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등)
- 주택, 생계·주거급여 지원, 활동지원(월 40~200시간), 일자리 연계,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주거유지서비스 제공
- 3차년도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는 주거 '정착'과 '유지' 지원서비스로 재구성함
- 개별맞춤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위한 옹호 및 지지자 역할 수행
 - (대상자 자립 전 단계) 주거전환을 위한 자립조사, 주거발굴 및 계약, 이주 지원, 주택환경개선, 사전 서비스 연계 등
 - (대상자 자립 후 단계) 일상생활 계획수립 및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보건의료, 식사·재무·안전 등 사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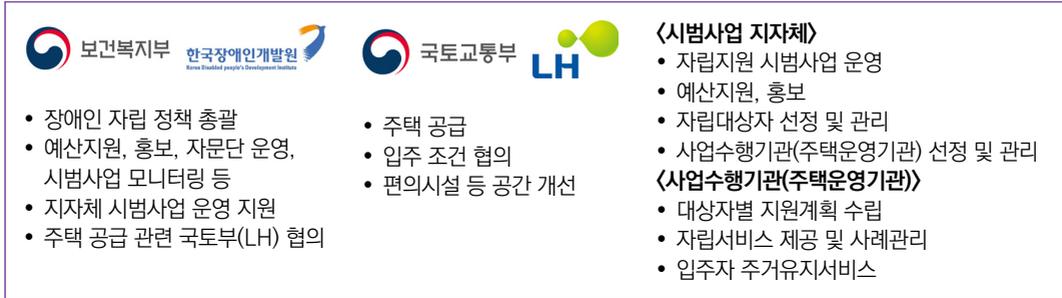
[표 17] 시범사업 수행기관(주택운영기관)의 주거유지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시범사업 대상자 주거지원서비스(정착·유지) 주요 내용
주거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이전 지원) 임대차 계약, 전기, 수도 설비 등의 연결, 필수적 가구나 비품의 구매 등의 초기 정착지원 •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주거환경개선비 1인 6백만원 내)
주거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유지 비용 관리) 공과금, 임대료 납부 및 관리 등 지원 • (건강관리 지원) 건강주치의 연계, 방문 건강 관리사업 연계, 약물복용 등 관리, 병원 동행, 운동 등 지원 • (일상생활 지원)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민원(이웃 갈등 등) 지원 • (사회복지 제도 연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 주거, 의료), 장애 연금 및 수당 등 정부보조금 신청 지원, 공공후견인 등 법적 지원 • (정서 지원) 정기적 방문(전담인력 등)을 통한 정서적 교류 및 상담 지원 • (재산관리 지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등(국민연금공단) • (응급상황 관리)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소방서 안전 점검, 경찰서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력체계

-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국토교통부)’와 ‘복지서비스(보건복지부)’ 두 가지 요소 결합

[그림 11]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력체계



■ 2차년도('23년)와 현재까지의 시범사업 진행 및 모니터링 결과¹⁷⁾

- 주요 실적으로는 시설·재가 장애인 총 4,324명 조사(2024.9.2. 기준), 총 537명 자립 희망자를 발굴하여, 230명을 자립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자립지원 전담인력 96명 배치(장애인 1.8명당 전담인력 1명)
 - 매입임대주택 등 253호 확보 및 공급('22년 100호, '23년 94호, '24년 59호)
 - 시범사업 참여지역 대상 매입임대주택 추가 확보 예정(복지부-국토부 협의)
 - 중·장기적 주택확보 방안으로 특화형¹⁸⁾ 매입임대주택 확보 추진
- 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충분하고 다양한 주택확보는 필수, 지역 및 장애특성 등을 반영한 주택 외에도 발굴된 장애인 수에 비해 주택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¹⁹⁾
 - '23년 말 기준 자립장애인(104명) 중 거주시설 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등 다양한 진입경로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서비스로는 일자리 지원 41명, 재산관리지원 서비스 36명(발달장애인 77명 중 34명 이용 중), 건강관리 104명(건강주치의 연계 24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 20명), 가정간호 1명 등)

17) 서해정 외(2024). 2차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18) 테마(예 : 청년, 예술인, 장애인 특화공간)가 있는 임대주택을 민간이 기획·조성·공급·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소유권자)이 지원 및 감독하는 매입임대주택, 현재는 특화형으로 명칭 변경
 19) 경기도 장애인 자립주택 시군 설명회 자료 참조(24. 1.15). 본 자료에서 23년 말 기준 104명 전한 완료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현황이 명시되어 있음

■ 3차년도('24년) 추진 중인 시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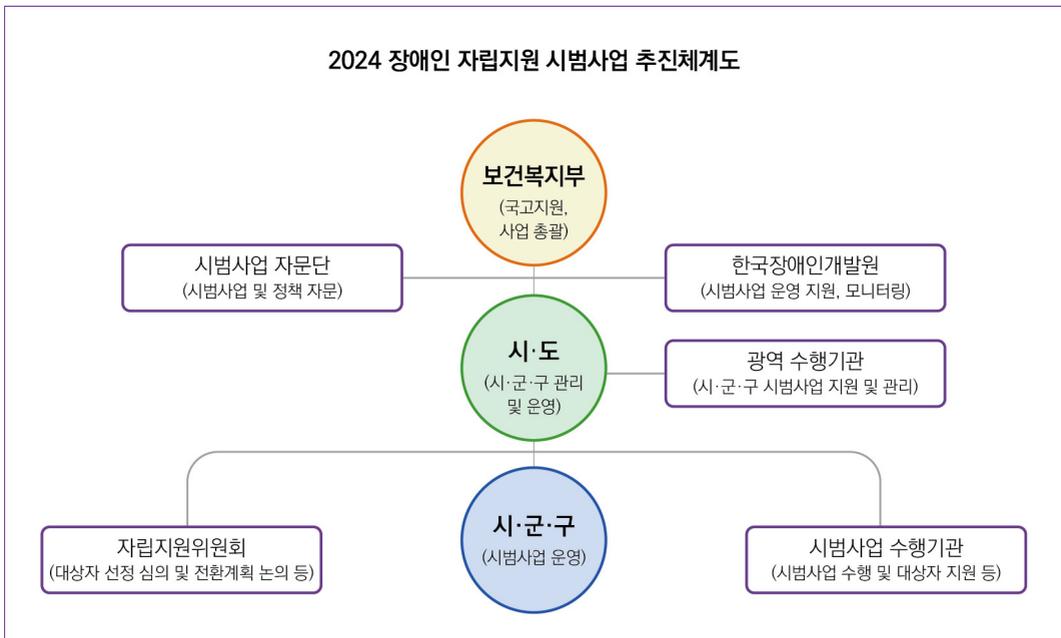
○ 추진 방향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과 함께, 보호자 장기 부재(사망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은 '시설 외 대상자' 비중 확대 추진

○ 사업추진체계 고도화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참여지역 선정, 국비 지원, 주택 확보(국토부 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
-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지원 및 평가, 지자체(수행기관) 교육, 모니터링 및 자립 지원모형 연구 수행
- (지자체) 광역이 주관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광역 또는 기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기초 협업 구조 운영
- (광역) 광역 단위 시범사업 총괄(기초 간 조율 등),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주택 확보, 사업수행기관 및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등
- (기초) 기초 단위 계획수립,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수행기관(서비스제공기관) 및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등

[그림 12]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

5)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사업 성과와 한계

① 지자체 사업 성과와 한계

■ 서울시 사업의 성과와 한계

- 전국 최초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리의 지원주택 도입 및 제도화
 - 전국 최초로 ‘주거우선(Housing First)’ 원리로 안정적 주택 제공 후 휴먼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방식을 시도한 지원주택 개념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도화한 지자체로서 그 지원 규모와 서비스 내용의 체계성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1인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면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장애인의 증가
 - 최근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다가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면서 지원주택의 입주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주택공급 위치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지역 아닌 곳으로 입주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비공급형 지원주택) 도입으로 주거지원서비스가 확장되었으나, ‘장애인 지원주택’(공급형 지원주택) 개념과의 혼란 발생
 - 자립생활 훈련을 목적으로 한 자립생활주택을 거친 후 입주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면서, 영구적 거처를 제공하는 ‘지원주택’과는 다르게 돌봄만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는 비공급형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의 공급형 이라고 하는 장애인 지원주택(본 연구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과의 혼란 발생
 - 그러나 본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서울주택공사와 주택계약을 해야 하고,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주택계약 주기에 맞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만약 여러 가지의 이유로 입주자가 비자발적으로 지원주택에서 퇴거²⁰⁾해야 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관하여 퇴거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음

20) 서울시 복지재단(2022),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매뉴얼의 퇴거 사유 참조(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 그 외 특약서 및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세부 내용에 해당)

■ 경기도 사업의 성과와 한계

-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기획 및 실시함
 - 2024년 본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앙정부와 협의, 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연계하였음
 - 중간 지원조직인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초기부터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사업설명회 등을 함께하면서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도모함
- 주택공급 및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도농복합지역, 군 단위에서의 사업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됨
- 시군 지자체별 탈시설 장애인 주거전환 및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제공 경험 부족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차이로 서비스 질 편차 예상

■ 서울시와 경기도 사업의 비교

- 서울시와 경기도 사업은 거의 유사하나 일부 차이 존재
 - 서울시의 경우 주택을 SH공사에서 물량을 공급하며, 경기도의 경우 지역공사(GH)와 더불어 LH공사와도 협업할 예정
 - 장애인 대비 전담인력의 비율 및 종사자 처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 여부 등에서도 시도 간 일부 차이가 존재함

[표 18] 서울 및 경기도 사업 비교

구분	서울	경기도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퇴소자 • 재가 장애인(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장애인) ※ 시설폐쇄 이용인(향유의집, 인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주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형 :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 자가형 : 일반주택, 공공임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거주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1인 원칙, 공동거주 희망 시 2인 거주 가능 (호별 분리 계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1주택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20년(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장 20년(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본인부담 ※ 보증금, 임대료, 생활비, 주택 관리비 및 공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본인부담 ※ 보증금, 임대료, 생활비, 주택 관리비 및 공과금
운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 총 12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총 10개 기관
전담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기관당 슈퍼바이저 1명 + 행정인력 1명 ① 공급형 : 코디네이터 1명 + 주거코치, 코디네이터 1인당 장애인 6명 ② 비공급형 : 코디네이터 1명 + 주거코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주택 전담인력 1인당 장애인 3명

구분	서울	경기도
보조금	<p>[품목예산] 운영기관별 추가인건비 91,200천원(슈퍼바이저+행정) 주택단위 ① 공급형 : 2명지원 50,200천원 (인건비 45,600 / 사업및운영 4,600) ② 비공급형 : 4명지원 51,600천원 (인건비 45,600 / 사업및운영 6,000)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p>	<p>[총괄예산] 기본적으로 복지부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경기도 추가지원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 '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5급 11호봉 기준(임금상승률 4%반영), 인당 월 108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야간, 공휴일 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인당 70시간)</p>
입주자 선정 방법	<p>① 공급형 : 공고(연2회,SH)→1차사정(SH) →선정(서울시)→입주계약(SH공사) ② 비공급형 : 모집(수시,운영기관)→서비스 신청(운영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1차 사정(발달장애인지원센터)→선정(운영기관)→모니터링(발달장애인지원센터)</p>	<p>• 공고접수(GH)→신청자격심사(소득, 자산조회) 및 적격자 선정(GH) →자립조사(서비스 제공기관)→입주자 선정 및 자립서비스 제공(시군 및 제공기관)</p>

② 중앙정부 사업 성과와 한계

■ 중앙정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와 한계

- 정책 성과로는 중앙정부가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서비스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임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공간설계, 공간운영 등 제도적 검토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형 마련을 위해 본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4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24년 기준 3차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지속적 발굴 및 추진할 필요
 -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제공,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방식 개선 필요
 - 대상자 진입 경로의 다양화, 대상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간 확대 필요
 - 광역 단위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전국적인 편차 해소,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시범사업 성격상 고용불안정성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또한, 본사업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과 예산 확보,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주거생활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주거 관련, 지원사항 관련, 서비스 관련, 그 외 사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19]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제도 및 서비스 관련 문제점 및 고려사항

구분	내용
주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형태를 다양화하여, 자립한 발달장애인이더라도 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거주시설과 지원주택 사업을 연계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매년 해가 지남에 따라 자립 완료 장애인 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원주택 운영비 또한 매년 증액되어야 하는 구조여서, 예산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재가 유지가 가능한 비공급형 지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으며, 수급권자 외 자산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공급형 확대 방안 고려
지원사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장애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은 돌봄 필요도가 높음에도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시간 산정을 위한 심사표가 소폭 변경(도전적 행동 등에 대한 물음 추가)되었으나 여전히 인지기능 취약에 대한 반영은 미흡하여 시간이 많이 부족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발 및 이에 따른 필요서비스 시간 산정 필요 • 재가 및 시설 입소자는 복지관 및 타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있으나, 자립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모든 활동 영역이 코디 및 활동지원사의 협력 내에서 한정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음.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활동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더욱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케이스(사례) 공유가 중요함
서비스 인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사의 경우, 현재는 장애인 기본교육, 유의사항 정도만 교육되고 있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현장 실습을 주로 거주시설을 위주로 하고 있어, 개인별 지원주택에서 실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역할을 하는 데 큰 부담을 가짐 • 활동지원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활동지원사 가이드라인, 주기적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 특화 교육이 필요함(현재는 40시간 1회성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짐). 또한, 이와 함께 연계기관 의무교육 모니터링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 • 활동지원사의 근로 불안정 및 시급 15,300원 정도의 저임금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움. 고용여건 개선을 통해 재직자 이탈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인력 확보 방안(외국인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 • 발달장애인은 120~600시간까지도 활동지원사 지원시간을 제공 받기도 하는데, 주중/주말/저녁 시간대별로 인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생활 적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고려 필요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의 칸막이로, 발달장애인 대상의 일상생활 및 돌봄서비스는 65세 미만의 연령으로 한정되어 있음. 65세 이상의 경우 신체적 능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돌봄 난이도 및 필요성은 더욱 높을 수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영역에서 전담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원 업무 영역 및 시간이 한정적이므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시설 등 이용), 그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함 • 일례로, 65세가 넘은 조기치매 장애인(요양보호등급이 있으며, 데이케어센터 이용)이 계신데,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여 활동지원사 등의 재가방문 돌봄이 안되며, 주거코치가 모든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케이스도 존재함 • 따라서,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계급여(30~40만원)로 거주시설 생활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 장기적으로는 노인+장애인 돌봄이 통합될 필요 • 사업 만족도의 경우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자립 후 생활만족도 조사가 어려워, 활동지원사 등의 관찰로서 의사를 읽어내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며, 사업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 • 특히, 자립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의 의료 접근성 저하, 고립 등의 문제는 거주시설 장애인에 비해 그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 관찰이 강화될 필요 • 장애인 학대 및 인권의 문제는 관리 영역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주: 학계 및 관련 전문가 6인의 인터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 사업 대상자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 현 장애인복지법 상 거주시설 이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준비 장애청소년, 정신재활시설의 정신장애인 등 진입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범사업의 경우 시설장애인의 자립욕구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주거전환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시설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의 욕구는 매우 높으나 지속적인 주거지원 서비스 필요성은 높지 않아 단순히 주택 등 초기정보제공, 이사 지원만 필요한 신체장애인(지체 16명(9%), 뇌병변 12명(7%) 등)과 경증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이들은 지역사회 내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간헐적인 주거유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의 발달장애인부터 매우 높은 중증발달장애인(신체장애와 정신장애 동반 중복장애, 도전적 행동 등)까지 필요한 지원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필요하며, 이러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지원 및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
 - 주거생활서비스대상자 중 보건욕구가 높은 대상자(의료 및 요양서비스, 발달장애 행동치료 등 지원필요도 높음)의 경우 지금의 지원서비스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내 독립된 생활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²¹⁾」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필요
 -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발달장애 지원사례 공유, 도전적 행동에 대한 학습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체계를 갖출 필요(수퍼비전이 가능한 중간관리자급의 직급 강화 포함)

2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27. 시행)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에서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위한 기초/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의 고용 불안정과 수행기관 등에서의 수퍼바이저 부재 시 지원서비스 업무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을 적절히 받지 못할 수 있어 전담인력에게 실질적인 업무 매뉴얼 제공 및 교육 필요
 - 또한, 이들의 업무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기준(지원강도와 상시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인력 1명: 장애인 2명~3명 등)과 적정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서울의 팀장급 수퍼바이저급 3급 5호봉, 경기도/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4급 8호봉 등)를 마련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탈을 최소화할 필요
-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관별 역할 정립 및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 시도는 주거생활서비스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 예산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선정 및 지도·감독, 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입주자 사례 논의 및 위기 긴급 지원 등의 역할
 - LH 및 지방공사는 입주대기자 목록 확보, 충분한 주택공급 및 관리,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전담
 - 광역단위의 수행기관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입주자 발굴 및 선정, 심층조사,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역할
 - 서비스 제공기관(현재 시범사업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 지자체(3), 공공기관(5), 복지관(7), IL(7) 등)은 주택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개인별 지원서비스 계획수립 및 제공, 기타 지원주택 운영관련 역할
 - 유관협력기관(활동지원사 파견 외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연계 협력 필요
 -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사적지원이 지역사회 자립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공적 및 사적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지원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방식의 고도화 필요
- 현재 입주자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거전환이 필요한 장애인인 경우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임차인의 권리 등 초기 정착 지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할 필요
 - 주거생활서비스에서 주택시설관리는 주택 내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 주택유지보수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퇴거 예방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

- 입주자 특성에 따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상담지원서비스나 자조그룹 연계, 정신장애 거주자를 위한 회복기반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책자를 이용한 서비스 설명 및 제공, 중고령 발달장애인 등의 외로움 감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그 밖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보건의료적 접근), 여성발달장애인 성 학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정신과적 증상 관리, 중고령 발달장애인 치매예방 및 장례준비지원(사후 물품 정리) 등 필요에 따라 지원
 - 다만, 돌봄지원과 자립 지원의 경계에서 과도한 돌봄으로 인한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
- 입주자의 선택권과 주거 안정성 보장(주택공급계획 등)
- 현재 지원주택 관련 법 부재로 주거유지서비스가 필요한 입주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국토부와 LH 공사가 추진 중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기획, 공모 등 절차상 한계가 있으므로 본 사업 수행 시 지자체별 지원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입주하는 시기 등을 고려한 공급 가능한 주택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유형을 포함한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가능하며, 원활한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해 가급적 도심지역으로 확보 필요
 - 서울시는 입주자 본인 명의로 SH주택을 계약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경우는 선정된 주택운영기관과 LH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주택운영기관과 입주대상자가 전대차 계약을 하는 형태임. 향후에는 입주 장애인이 LH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
- 주거생활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지원 및 연계를 위한 법률 제정 노력
- 현행 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주거복지법제는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장애인 돌봄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주택과 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결합된 주거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분절된 법 및 부처 체계에서 사업의 경직성 존재
 - 이에 따라 현재 주거생활서비스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근거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

참고문헌

- 김기룡 외(2024). 경기도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주택 운영 모델 및 지원방안 개발 연구,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 경기도의회
- 김도희(2018), 주거와 복지를 하나로, 지원주택 도입,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김지아·진혜민·이병화·조문순·전근배(2022). 장애인 탈시설 욕구조사 연구용역. 대구광역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0).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 보건복지부(2021).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8.2.)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 서울시복지재단(2021).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매뉴얼
- 서울시복지재단(2024). 장애인주거서비스 사업안내서
- 서해정·민소영·김지윤·이상준(2021).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해정·박정연·전근배·이상준(2021).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기준 개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해정·이미영 외(2024). 2차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서해정·이선화(2018).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손현(2019).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유동철(2021). 주거복지컨퍼런스 자료집-장애인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개선방안
- 이병화·이송희(2020).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보건과 복지』. 22(2). 7-32.
- 이병화·김동주·이선우·이현민·박지환(2022). 2022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 전지혜·이병화·이정은·남지현·박시은·이세희·김광백(2022). 인천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방안연구, 인천광역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현복지관(2019). 성인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주거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사업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현명이·김현승(2018).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25-332.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현황과 과제

인쇄 2024년 12월 30일
발행 2024년 12월 30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화 02)786-2190
팩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쇄처 (주)명진씨앤피(02-2164-3000)

©2024 국회미래연구원

ISSN 2983-4392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